

# 이해상충 관리 및 정보교류차단 정책

시행일자 : 2021.5.20.

##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정책은 스카이워크자산운용(이하"당사")이 당사 내부통제기준 및 기타 관련 법규 등을 바탕으로 이해상충 및 정보교류차단 관련 사안을 관리하고자 수립되었으며,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이해상충사안을 명시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제2조(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식별 및 설정)** ①회사는 이해상충 방지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정보에 대해 이 정책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정보교류를 차단하여야 한다.

1. 법 제17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2. 투자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3.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및 신탁재산의 구성내역과 운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4. 고유재산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또는 소유 현황에 관한 정보로서 불특정 다수인이 알 수 있도록 공개되기 전의 정보

②회사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미공개중요정보 여부의 판단을 위해 회사의 금융투자업등 업무와 관련 있는 법인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미공개 중요정보 여부의 식별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1. 재무구조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2. 기업경영환경에 중대한 변경을 초래할 수 있는 사실 또는 결정
3. 재산 등에 대규모 손실이나 가치 상승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4. 채권채무관계에 중대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실 또는 결정
5. 투자 및 출자관계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6. 손익구조 변경에 관한 중요사실 또는 결정
7. 경영·재산 또는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관하여 중대한 영향을 미칠 회계처리기준 또는 회계추정의 변경 결정
8. 관계법규 또는 감독기관의 요구에 따른 경영상태 등에 관한 자료의 공시 또는 공표

9. 사외이사 및 감사의 선임·해임 결정
10. 최대주주 등과의 거래
11. 공개매수의 실시 또는 중지
12. 회사의 판단 기준에 의하여 이에 준하다고 여기는 사항으로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의 발생 또는 결정

③제1항제2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정보에서 제외한다.

1. 투자자가 보유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등록주식등의 총액과 전자등록주식등의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2. 투자자가 예약한 증권에 대한 총액과 증권에 대한 종류별 총액에 관한 정보
3. 채무증권의 종목별 총액에 관한 정보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제공의 동의를 받거나, 제3조의2에 따른 전송요구를 받는 개인신용정보
5. 기타 이해상충 발생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내부통제기준」제55조제2항에 따른 정보교류 통제 담당 임원 등(이하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④제1항제3호의 정보 중 다음 각 호의 정보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서 제외한다.

1. 부동산(지상권·지역권·전세권·임차권,분양권 등 부동산 관련 권리를 포함한다)및 특별자산(부동산 및 특별자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회사가 발행한 증권을 포함한다)운용 관련 정보로서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
2.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한 정보
3. 기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정보

⑤임직원은 업무 중 생산 또는 취득하여 알게 된 정보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해당 정보가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결정한다. 이 경우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판단결과를 통보 받을 때까지는 해당 임직원은 해당 정보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 간주하여야 한다.

⑥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공개되는 등 해당 정보가 더 이상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로서 보호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부분에 대하여 「내부통제기준」제54조에 따라 지정된 부문별 또는 정보별 책임자는 동 사실을 제4조제1항에 따른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이하 “정보 교류통제 담당 조직”이라 한다)에 통보하고, 정보교류통제 담당조직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해제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분의 설정)** 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기준을 고려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을 투자자재산부문(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투자자문재산)과 고유재산부문으로 구분하여 설정하

여야 한다.

- 1. 생산·취득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종류
- 2. 금융투자업의 종류(법 제77조의3에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에게 허용된 업무를 포함한다) 및 경영·부수 업무
- 3. 구체적인 업무특성 수익구조 및 이해상충 가능성
- 4. 기타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구분 필요성

②회사는 동일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에서 특정 사안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한하여 일시적으로 서로 다른 부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4조(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의 설치·운영)** ①회사는 정보교류의 차단 및 예외적 교류의 적정성을 감독하고, 정보교류의 차단과 관련 한 업무를 총괄하는 정보교류통제 담당 조직 및 담당 임원 등을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와 준법감시인으로 지정한다.

②준법감시인은 정보교류통제 업무 중 일부를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의 임직원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임의 범위와 책임의 한계 등이 명확히 구분되어야 한다.

③회사는 제1항부터 제2항에 따른 임직원에 대해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을 부과함에 있어 보다 강화된 준수 의무를 적용하여야 한다.

**제5조(정보교류차단의 일반원칙)** ①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업무에 활용하는 임직원은 해당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로 한정하여 정보를 활용하여야 한다.

②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보유한 임직원은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해당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이 아닌 임직원 등 제3자에게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이 아닌 자가 직무와 관계없이 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게 되는 경우 해당 임직원은 지체없이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에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임직원은 습득한 정보의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준법감시인 및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는 제2항 내지 제4항의 준수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제6조(상시 정보교류 차단)** ①회사는 영위하는 업무의 특성 및 규모 이해상충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제3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부문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효과적인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 한다.

- 1. 사무공간의 분리

2. 정보시스템 접근 권한 제한 등 전산적 분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의 회의·통신에 대한 상시적 기록유지 또는 제한
4. 기타 정보교류를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유·무형의 정보차단장치의 설치·운영

②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 차단 비대상 부문간의 업무를 겸직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7조제1항 및 제8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상시 정보교류 허용 임원)**①회사는 임원(지배구조법 제2조제2호의 임원을 의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직위 또는 직무상 관리·감독의 책임 등의 필요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및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으로 지정되지 아니한 부문(이하 “정보교류차단 비대상부문”이라 한다)간의 업무를 통할할 수 있도록 상시 정보교류가 허용되는 임원을 아래와 같이 지정한다.

1. 대표이사
2. 준법감시인
3. 위험관리책임자
4. 기타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이사회 승인을 득한 임원

**제8조(예외적 교류의 방법)**①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간 또는 정보교류 차단 대상 부문과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 간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2. 해당 부문별 책임자 및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사전 승인(정보교류 차단 대상 정보의 동일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계속적·반복적인 교류의 경우 포괄적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을 것.
3. 제공하는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가 업무상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한정 될 것
4.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받은 임직원이 해당 정보를 해당 업무 외의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할 것
5. 본 조에 따라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할 권한을 부여 받은 임직원은 해당 정보 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의무 및 제한사항 등을 준수할 것
6. 회사는 본 조에 따른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예외적 교류와 관련한 기록을 작성하여 금융투자업규정 별표12에서 정한 내부통제 관련 자료의 최소보존기간 이상 유지·관리할 것

②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은 제1항에 따른 예외적 교류의 구체적 방법을 다음 각 호의 방법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의 제공
2.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 내 정보에 대한 일시적 접근 권한 부여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에 접근하여야 할 특정 임직원의 정보 교류 차단 대상 부문으로의 권한을 정한 편입

**제9조(후선 업무 목적의 예외적 교류)**①제8조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정보교류 차단 비대상 부문 중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관리 등 업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에 대하여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과 상시 정보교류를 허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임직원은 업무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정보교류차단 대상 부문내의 정보에 접근하여야 하며 비밀유지, 부당정보 이용금지, 선행매매 금지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정하는 의무와 제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0조(거래주의-제한 목록 지정)**①미공개중요정보 또는 미공개중요정보에 준하는 거래정보나 기업정보를 취득하는 경우 등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법인과 관련한 금융투자상품을 거래주의 또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준법감시인 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는 거래주의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매매거래를 상시 감시하여야 하며, 회사 및 임직원과 고객간, 회사와 임직원간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③준법감시인 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는 거래제한 상품 목록으로 지정한 금융투자상품에 대하여 회사의 계산에 의한 매매 및 임직원의 자기계산에 의한 매매 등이 제한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준법감시인 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부서는 제3항에 따른 매매제한 대상 임직원 범위를 정하여 거래제한 상품 목록을 통지하거나 이를 조회하도록 할 수 있다.

**제11조(이해상충 우려가 있는 거래)**①회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파악된 거래를 유형별로 구체화하여 구분 목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제1항에 따른 거래 유형에 따라 거래 중단, 고객에 해당 사실의 고지 등 이해상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응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해상충 유형	주요 충돌관계	업무 프로세스	이해상충 방지수단
개인투자행위	임직원 ↔ 고객	임직원의 개인투자 (국내상장주식)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및 사후보고
재산상 편익	임직원 ↔ 고객	업무와 관련하여 선물 및 향응 을 수령하는 행위	대표이사 또는 준법감 시인의 사전승인 또는 사후보고
의결권의 행사	회사 ↔ 고객	집합투자재산내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의결권행사지침 마련 및 준수
중개회사의 선정	회사 ↔ 고객	집합투자재산 매매를 위한 중 개회사 선정	중개회사별 매매주문 배분계획 승인
운용지시 (사전자산배분)	고객 ↔ 고객	여러 집합투자기구(계좌)를 위 한 통합 주문	운용역과 트레이더 분 리 또는 사전자산배분 확인
집합투자기구간거래	고객 ↔ 고객	집합투자기구간의 자산거래	준법감시인의 사전승인
판매회사에 대한 정보 제공	고객 ↔ 고객	집합투자재산 정보의 제공	일정기간이 경과한 정 보의 제공

**제12조(계열회사 등 제3자와의 정보 교류)** ①회사는 계열회사(금융투자업자가 법 시행령 제16조제10항에 따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의 지점, 그 밖의 영업소인 경우에는 그 외국 금융투자업자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등 제3자에 대해 제6조 상시정보교류차단에 따라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여야한다. 다만,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와 무관한 정보 등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정보의 교류 또는 정보교류차단 비대상 부문의 정보교류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회사는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이해상충 우려 및 내부통제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계열회사 등 제3자를 유형별로 구분한 후, 각 유형별로 내부통제 기준을 달리 정하거나 회사가 정보차단벽을 설치·운영하는 제3자의 범위를 특정하여 내부통제기준을 운영할 수 있다.

③회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열회사 등 제3자에 대해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

1. 국내의 법령에 따라 보유주식 등에 대한 보고·공시 등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해당 정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2. 회사의 업무를 위탁 받거나 회사와 업무를 제휴한 제3자에게 위탁 또는 제휴한 업무의 처리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회사의 내부통제기준의 준수업무 및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경우

4. 감사, 인사, 회계, 재무, 경영지원, 경영분석, 상품개발, 전산, 결제, 법무, 준법감시 및 리스크 관리 등의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회사가 금융투자업등 관련 업무를 계열회사 등 제3자와 공동으로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6. 그 밖에 업무상 정당한 사유가 있고, 정보제공으로 인한 이해상충 발생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경우로서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
- ④제8조 및 제9조는 회사가 계열회사 등 제3자와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교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3조(임직원의 겸직)**회사는 지배구조법등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계열회사 등 제3자의 임직원을 회사의 임직원으로 겸직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임직원 교육)**①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회사 내부 망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회사는 임직원이 정보교류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정보교류차단 대상부문 내의 임직원에게 적용되는 사항
2. 모든 임직원이 정보교류 차단을 위하여 준수해야할 사항
3. 정보교류차단 대상 정보의 부당 이용 시 행정제재 및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
4. 기타 정보교류통제 담당 임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정보교류차단 내부통제기준 및 관련 지침 개정 시 임직원에게 대하여 주의를 환기하여야 한다.